

교원양성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20.12.22. 개정 2022.04.11. 개정 2022.06.27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원회의 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, 1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설치학과 학과장 및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0.12.22., 2022.04.11>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대한 당연직 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만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0.12.22.>
- ④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교원양성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2.06.27.>

제3조 (위원회의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자격 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4조 (위원장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제1항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1.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 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소위원회)

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교직소위원회 : 교직과정의 개발, 교직이수학생 선발, 교원자격 검정, 교직교육과정 운영
2. 교류협력소위원회 : 학교 현장과의 교류협력
3. 교육실습소위원회 : 교육실습의 계획, 운영 및 평가

제7조 (수당지급)

위원 중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운영세칙)

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8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12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1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6.27>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